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 22.(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5.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74호)

나. 회부일자 : 2024. 4. 11.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4. 1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신신재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1항)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4. 2. 29. ~ 2024. 3. 20. (20일간),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현행 조례 제5조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시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의 소액 체납세액 기준에 준하여 일반우편 발송 세액 기준을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느나,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1]의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1)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 22.(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3. 4. 정윤주 의원 외 6인 발의 (의안번호 265호)

나. 회부일자 : 2024. 4. 11.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4. 1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태조사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7조제6항)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 2024. 3. 7. ~ 2024. 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정의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를 새롭게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 2007. 7. 1.][법률 제8217호, 2007. 1. 3., 제정] 시행**[2]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등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0년 12월 24일「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였으며,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2012년 7월 19일, 성북구 공공구매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음.

○ 또한 2014년 12월 16일, 사회적경제센터 증축에 맞추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가치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음.

○ 2023년말 기준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49개, 협동조합 152개, 마을기업 7개로 총 208개가 운영되고 있음.

나. 조문 검토

○ 안 제2조 제1호 “사회적가치”[3]와 제4호 “사회적경제”[4]의 정의

---

3) 제2조(정의) 1. **“사회적가치”** 란 경제 · 문화 · 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

1. **“사회적가치”** 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 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기회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 · 복지 · 인권 · 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 환경적 복리증진

4) 제2조(정의) 4. **“사회적경제”** 란 사회적 · 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

를 새롭게 규정함.

○ 안 제6조제4항,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태조사를 매 2년마다에서 매 4년 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한 바, 이는 제6조제1항[5]에 따라 기본계획이 4년 마다 수립되므로, 제4항 실태조사 기간 또한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6조제3항제1호, 위원회 구성에 현 제3항제1호 및 제2호[6]를 삭제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대표'로 변경하고,

---

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

4. **"사회적경제"** 란 사회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제2조제1호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수립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생활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위원**
2.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 안 제16조제3항제3호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대표’를 신설함.

○ 안 제16조제3항제4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함.

○ 안 제17조제6항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규정하였는 바, 이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설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 22.(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5.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75호)

나. 회부일자 : 2024. 4. 11.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4. 1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른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재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설명 : 성북구 재활용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6 (상월곡동, 성북구 새활용센터)

○ 규　모 : 새활용센터 내 1~3층

토 지			건 물			
지목	면적	소유	구조	층	연면적	용도
잡종지 등	671㎡	구유지	철 근 콘크리트	1층	65.54㎡	공용면적, 주차장
				2층	343.36㎡	공용면적, 재사용매장
				3층	336.27㎡	공용면적, 재사용매장
				1층	24.18㎡	휴게공간, 공용면적, 주차장
				4층	337.66㎡	공용면적, 사무실, 교육장
				옥탑		태양광 설비,녹지공간

나) 위탁기간 : 3년(새활용센터 준공 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다) 선정방법 : 공개 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라) 수탁자격: 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소재인 자

○ 재활용사업(가전・가구수리, 판매 등) 경험이 3년 이상인 법인과 단체(개인)

마) 위탁사업의 범위

○ 재활용 판매품 수거, 전시 및 판매, 사후 서비스, 잔재물 처리

○ 취약계층 지원 및 재활용 홍보 등

○ 1층~3층 시설물 사용 관리

○ 수리소 운영

바) 위탁비용 : 수익을 동반하는 시설로 구 예산지원 없음

사) 사용료 부과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토지 및 건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연간 사용료 부과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동의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7] 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재활용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8]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임.

---

7)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8)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성북구 재활용센터 현황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6(상월곡동, 성북구 새활용센터)
❍ 시설현황 : 대지 671㎡(약 203평), 건물 1,107㎡(336평), 지상4층 새활용센터의 1~3층을 재활용센터로 사용
❍ 위탁기간 : 2024. 7 ~2027. 6(3년)
❍ 위탁사무 : 재활용품 수거, 전시, 판매
❍ 사업기간 : 2020. 1.~2024. 6.
❍ 사 업 비 : 76억7,600만원(시비 41억2,000만원, 특교 17억7,800만원, 구비 17억7,800만원)

○ 구(舊)재활용센터는 2001년 건립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취급되는 상품이 중고품과 일부 중소기업 가구 등으로 구민 이용이 적고,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거의 상실 되어 있었음.

이에 구는 다양한 중고품을 구매・판매, 재활용・업사이클 관련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자원순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 새활용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비 41억원과 특교 17억원, 구비 17억등 총 76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성북구 새활용센터를 건립하게 됨.

나. 조문 검토

○ 본 동의안은 성북구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해당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9]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9)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마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10]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음.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다. 종합 검토 결과

○ 성북구 재활용센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재활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 관련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바,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성북구의 예산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본 동의안은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11] 및 관련 조례 등 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11)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 22.(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1. 이일준 의원 외 15인 발의 (의안번호 277호)

나. 회부일자 : 2024. 4. 11.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4. 1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일준 의원)

가. 제안이유

성북구 통・반장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 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동장의 통장회의 등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나)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부서협의 :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4. 4. 4. ~ 2024. 4.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통·반장**[12]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9조제2항**[13]을 신설하여 동장이 통장회의 또는 연석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 안 제2조 : 관할아래 → 관할 아래
- 안 제7조 : 요망사항 → 건의사항,
  주민지도 (전시에 한함) →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배급 (전시에 한함) → 배급(전시에 한함)
- 안 제8조 : 반내 → 반 내, 월 1회로하고 → 월 1회로 하고
- **안 제10조제1항**[14] **문구를** 재정비하고, 편의제공의 이유에 대해

---

12) 2024. 3. 기준 20개동 통장 450명, 반장 2,297명

13) **제9조(통 반장회의)** ① <생략>
② 동장은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4) **제10조(편의제공 등)**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공적장부 무료열람

조례 **제7조의 임무수행**[15]에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 통·반장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5) **제7조(임무)** ① 통 ·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08. 12. 23, 2011.7.20)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및 통 · 반 관리 (개정 2008. 12. 23)
4. 각종 시설 확인
5. 구 추진 주요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 및 협조 (개정 2008. 12. 23, 2011.7.20)
5의2.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신설 2008. 12. 23, 개정 2011.7.20)
6. 통 ·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 (전시에 한함) (개정 2011.7.20)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20)
10.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 등 새로운 임무개발 및 참여유도 (신설 2011.7.20)
11. 구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 (신설 2011.7.20)
12.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 위기가정 발굴 연계 (신설 2016.3.3.)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 22.(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1. 김육영 의원 외 17인 발의 (의안번호 278호)

나. 회부일자 : 2024. 4. 11.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4. 1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공립박물관의 무료화 추세 확산 및 저작권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시 저작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성북선잠박물관과 성북근현대문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관람 및 매표시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작권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4. 4. 4. ~ 2024. 4.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박물관의 무료화 추세 확산 및 저작권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 시 저작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성북선잠박물관과 성북근현대문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2조 정의, 현 조례에 제1호부터 4호[16]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대여, 소장품, 시설, 관람료, 수강료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관람권 매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명확히 함.

○ 안 제7조에서는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

---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자료의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며,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우리구 박물관 관람료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항**[17]에 따라 유료로 되어 있으나, 현재 **국·공립박물관의 무료화 추세 확산**[18] 및 전시 관료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활동으로 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관람료 징수 시 저작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성북선잠박물관**[19]과 **성북근현대문학**

---

17) **제7조(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1) **자치구 박물관 무료 운영 현황**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국립경찰박물관, 서울특별시립 역사박물관, 서울시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용산구 용사역사박물관,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등

19) **성북선잠박물관**

❍ 운영일시 : 매주 화~일요일 10:00~18:00 ※ 휴관 : 1.1. 설·추석연휴, 매주 월

❍ 운영인력 : 총7명(명예관장1명, 학예사 2, 기간제근로자4명)

❍ 운영주체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직영

❍ 소요예산 : 263,207천원

❍ 소 장 품 : 90점 보유 (2024. 2.기준)

관[20]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불필요한 법리적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위　　치 : 성북구 성북로 96(성북동)

❍ 규　　모 : 대지300㎡/연면적 339.18㎡ / 지하1층~지상3층, 옥상

❍ 시설현황

구 분		규모	기 능
내부	3층	71㎡	수장고, 기획전시실
	2층	71㎡	제2전시실, 화장실
	1층	71㎡	제1전시실, 사무실, 안내데스크
	지하1층	10㎡	다목적실
외 부			주차장(주차면수 2대)

❍ 관 람 료 : 1,000원 (※ 2023년 관람료 수입 2,120천원)

20) 성북근현대문학관

❍ 운영일시 : 매주 화~일요일 10:00~18:00 ※ 휴관 : 1.1. 설·추석연휴, 매주 월

❍ 운영인력 : 총5명(명예관장 1명, 학예사 2명, 기간제근로자 2명)

❍ 운영주체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직영

❍ 소 장 품 : 734점 보유 (2024. 2.기준)

❍ 소요예산 : 564,377천원(※ 자산취득비 250,000천원 포함)

❍ 위　　치 : 성북구 성북로 21길 24(성북동)

❍ 규　　모 : 대지 570㎡(172평), 연면적 450㎡(136평)/지하1층~지상2층

❍ 시설현황

구 분		규모	기 능
내부	2층	152㎡	상설전시실, 사무실
	1층	163㎡	기획전시실, 수장고
	지하1층	135㎡	안내데스크, 자료열람실
외 부			주차장(주차면수 4대)

❍ 관 람 료 : 1,000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 22.(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1. 양순임 의원 외 12인 발의 (의안번호 279호)

나. 회부일자 : 2024. 4. 11.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4. 1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2022년 12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명문화함.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나. 주요내용

가)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6조)

나)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세분화하여 명시하며,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문화 신설함(안 제6

조, 안 제6조의2)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4. 4. 4. ~ 2024. 4.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2022. 12. 8.)에 따라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구 관내 작은도서관은 총 49개소로 공립 14개소(**지자체 직영 11개소**[21], **직영외 위탁 3개소**[22]), 사립 35개소(**개인 및 단체 13개소**[23], **종교시설 10개소**[24], **법인 2개소**[25], **아파트 10개소**[26])가 운영되

---

21) **지자체 직영** : 길음2동, 돈암2동, 보문동, 석관동, 성북동, 안암동, 월곡1동, 장위1동, 정릉1동,정릉4동, 종암동새마을문고

22) **직영외 위탁** :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성북이음도서관, 오동숲속도서관

23) **개인 및 단체** : 기쁨이자라는작은도서관, 꿈터작은도서관, 꿈틀도서관, 다슬도서관, 독서예찬 작은도서관, 뒤죽박죽도서관, 북악하늘작은도서관, 성북동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핸드인핸드, 정든마을 작은도서관, 푸른하늘작은도서관, 하늘비전작은도서관

24) **종교시설** :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 돌리네책빵, 성광작은도서관, 쉴만한물가작은도서관, 아띠작은도서관,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우리들문고작은도서관, 은혜로운 작은도서관, 정인교회꿈땅작은도서관, 한뜰작은도서관

25) **법인** : 생명가족작은도서관, 시온성 작은도서관

26) **아파트** : 글빛누리작은도서관, 길음뉴타운푸르지오도서관, 길음동부센트레빌어

고 있음.

나. 조문 검토

○ 안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 안 제1호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27]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28]으로,

- 안 제2호 “공공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법」 제2조4호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29]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린이글마당, 래미안석관북카페, 래미안퍼스트하이도서관, 북적book적, 세레니티문고, 어울림북터작은도서관, 월곡두산공감작은도서관, 하늘채 작은도서관,힐스테이트별빛작은도서관

27)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 독서활동 ·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28) **「도서관법」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 ·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 · 독서활동 ·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9)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 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

로,

- 안 제3호 “도서관자료”에 대한 정의를 **「도서관법」 제2조제2호**[30] → **「도서관법」 제3조제2호**[31]로 변경하였음.

○ 안 제6조제1항, 제2항은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을

- 안 제1항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제5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로

- 안 제2항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32] → **「도서관법 시행령」**

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3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2)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제33조[33]로 변경,

○ 안 제6조의2는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규정을 **「도서관법」 제36조**[34]에 따라 신설하였음.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 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제33조(도서관 인력 · 시설 · 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34)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 · 도지사나 시 · 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 도지사나 시 · 도교육감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 도지사나 시 · 도교육감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